

한국인의 이미지로 인식된 '가정폭력'

부모간의 가정폭력은 간접적인 자녀 학대 행위로 간주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은 개인의 이혼소송이 법원에 신청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라는 법령하에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자녀를 보호하며, 가정폭력의 반복을 미리 방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가정법원 판사들에게 한국인의 이미지로 인식된 점의 하나가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이다. 수치스럽지만 그만큼 가정폭력으로 인한 문제로 가정법원 및 심지어 형사법원을 드나드는 한인의 숫자가 많다는 얘기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의 주체이나 주량과 상관관계가 있으나 술이나 마약 등 자기통제(Self Control)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의 투입이 없는 경우에도 극심한 가정 폭력과 그 피해현상을 법원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된다.

이혼 판결을 받은 후, 전처를 살해하겠다고 충격 행위를 벌이다 끝내는 자살 행위로 이어진 사건이나 자녀가 구타하는 부모를 때리거나 살해했다는 이야기도 더 이상 생소한 얘기는 아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접하고 상담하는 경우, 피해자의 대부분은 이혼신청 없이는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명령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이혼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성급히 이혼부터 신청하려하거나 혹은 이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평생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예를 흔히 보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은 개인의 이혼소송이 법원에 신청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라는 법령하에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자녀를 보호하며, 가정폭력의 반복을 미리 방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폭력 발생 직후, 보호명령을 요청하는 'Ex Parte Application'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Ex Parte Application'이란 병원의 응급실을 통한 응급처치와 같은 성격으로 법원으로부터 응급조치 명령을 받는 절차라 하겠다.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명령 신청은 개인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법원 사용료나 혹은 서류접수 비용의 부담은 전혀 없다. 또 영어가 부족할 경우 법원은 법정 통역사를 써서 당사자나 목격자의



신혜원(가정법 전문 변호사)

진술을 듣는다. 법원을 통해 응급으로 받을 수 있는 임시 보호명령으로 'Temporary Restraining Order and Stay Away Order'를 들 수 있다. 약자로 TRO라고 불리는 이 명령은 흔히 임시 접근금지 명령으로 알려져 있다.

접근금지 명령은 가해자가 피해자 및 자녀의 신체, 거주지, 직장, 학교, 차량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접근금지 명령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각 나가야 되는 거주지 퇴거 명령, 임시 자녀 양육권, 방문권 및 자녀 양육비에 대한 명령을 동반하는 것이 상

례이다. 'Ex Parte Application'을 통해 내려진 임시 보호명령은 명령일로부터 3주 동안 효력을 발생하며, 3주 후에 본 공판 날짜가 잡혀진다. 본 공판에서, 법원이 당사자 진술과 증거에 기준해 가정폭력의 사례가 발생했었던 것으로 결론 내리게 되면, 위에 열거한 임시 보호명령의 유효기간이 길게는 3년까지 연장된다.

가정폭력에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는 부모 간의 폭력사태에 노출된 자녀문제이다.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벌어진 가정폭력 행위는 부모의 간접적인 자녀학대 행위로 간주해 엄격히 다루며 때로는 주정부 이동보호국이 관여하기도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녀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반복되는 가정폭력은 피해자 개인이 어떠한 이유로도 그냥 덮고 지나갈 개인의 문제는 아니며, 가해자 개인 또한 가정폭력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혹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책 없는 약속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다. 또 이미 부모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상처의 골이 깊어진 자녀의 경우에는 더 문제가 확산되기 이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유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필자는 가정을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하고 싶다. 잎이 시들어가는 나무는 그에 적절한 물과 햇볕과 영양분이 필요하듯이, 가정폭력으로 병들어가는 가정 또한 그에 대한 보호대책과 예방책이 필요하다. 분명, 우리 사회가 푸르고 건강한 가정을 절실히 필요로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문의 213-251-5401